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4 선고 2019가합6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명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0. 6. 10.

판 결 선 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은 2013. 2. 20.자 43,000,000원, 2013. 3. 27.자 386,000,000원 뿐이다(원고도 2020. 1. 8.자 준비서면에서 이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은 금액은 위 각 인출액의 합계액인 429,000,000원(43,000,000원 + 386,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박찬범, 판사 오승희

별지